

대구지방법원 2017. 4. 5 선고 2016가단1165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피고1. B

2. C

변론 종결2017. 2. 22.

판결 선고2017. 4.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17. 접수 제793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14. 유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D의 동생이고, 피고들은 D의 자녀들이다. D은 2016. 3. 8. 상속인으로 피고들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피고 B는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5.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2. 원고의 주장

D은 2016. 3. 8. 원고, 다른 동생, 어머니, 신부, 쉼터 직원들의 참여 하에 청북 청원군 E 소재 F병원 G 호스피스병동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녹음유언을 하였다.

피고 B는 위와 같은 D의 유언 사실을 알면서도 2016. 5.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유언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들은 D의 상속인으로서 유언집행자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고(민법 제1060조),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하며(민법 제1065조),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민법 제1067조).

이처럼 민법이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4, 5호증, 을 제1, 2, 3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2016. 3. 8. 말기암환자로 호스피스시설인 F에 입소하였고, 같은 날 D의 동생 H, I이 교회 신부, 시설 직원들이 있는 병실에서 D에게 사후 재산의 처리에 관한 의사를 물으면서 그 장면을 녹화한 사실, 그런데 그 녹화 장면에 의하면 당시 D이 병세로 숨가빠하면서 제대로 의사표현을 하지 못했고, 잠에 빠지려고 하는 듯 의식이 뚜렷하지 못할 때에는 H이 D을 깨워가며 계속 녹화를 진행한

사실, D이 스스로 재산처리에 관한 의사를 진술한 것이 아니라, H과 I이 질문을 하면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응" 등으로 대답하였을 뿐이고, 질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 대답을 하지 못하기도 한 사실, 또한 D이 자신의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지도 않았고, 참여자들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지도 않은 사실, 그 후 D이 같은 날 바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유언이 D의 진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녹음 또는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의 방식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지도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D의 유언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최정인

별지